

# 투르크메니스탄(Turkmenistan)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6년
- 현행법 : 2012년(연금보험), 2013년 시행; 2012년(사회보호법), 2013년 시행

## 2 제도형태

- 명목확정기여(NDC) 및 사회부조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명목확정기여(NDC) : 근로자 및 자영자
  - 임의가입 가능
- 사회부조 : 빈곤한 자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
  - 명목확정기여(NDC) : 없음; 임의 가입자 총 월 소득의 2%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자영자
  - 명목확정기여(NDC) : 법적 월 최저임금 30배보다 적은 총 월 소득에 대해 법적 월 최저임금의 10%; 법적 월 최저임금의 최소 30배의 총 월 소득에 대해 법적 월 최저임금의 2%
  - 월 법적 최저임금은 715 마나트(manat)(2019년 1월에는 790 마나트(manat))
  - 사회부조 : 없음
- 사용자
  - 명목확정기여(NDC) : 월 임금지급액의 20%, 위험직군의 경우에는 추가 3.5%. 특정 근로자에게는, 보험료가 부문에 따라 다름
  - 사용자 보험료 납부금은 질병, 출산, 및 산재 급여의 재원으로 사용
  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부

- 명목확정기여(NDC) : 필요 시 보조금 지급; 사용자로서 기여함
- 사회부조 : 총 금액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) : 최소 5년의 가입기간을 가진 62세(남성) 또는 57세(여성)
  -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모(母), 16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자, 군인, 항공 조종사 및 항공승무원, 위험직군 종사자에게는 연령 조건이 감소됨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62세(남성) 또는 57세(여성)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) : 최소 5년의 가입기간을 가지며 그룹 I (완전근로능력상실로 지속적인 보살핌을 요구함), 그룹II(감소된 근로능력을 가졌으며 때때로 보살핌을 요구함) 또는 그룹III(감소된 근로능력)장애자로 판정되었어야 함
  - 지속적인 주의 수당 : 그룹 I 또는 그룹II 시각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그룹 I 또는 그룹II장애자에게 근로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마다 지급
  - 보건부 및 의료산업 하의 지역 또는 국가 의료 위원회에서 장애정도를 판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그룹 I 또는 그룹II 장애자로 판정된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그룹 I, 그룹II, 그룹III 장애자로 판정되었으며 5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연령무관인 자에게 지급
  - 지속적인 주의 수당 : 그룹 I 또는 그룹II 시각장애를 가진 자에게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그룹 I 또는 그룹II장애자에게 근로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마다 지급

○ 유족급여
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가입자 사망 시 피부양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
- 고아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완전한 고아에게 지급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) : 월 연금액은 퇴직 후 평균 기대수명과 가입자의 명목 연금 납입총액으로 계산
  -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연금수급자격은 근로 년 수, 소득, 및 퇴직 후 평균 기대수명에 근거하여 명목 연금 납입총액으로 환산
  - 퇴직 후 평균 기대수명은 174개월
  - 월 최소 노령연금은 254 마나트(manat)(2017년 1월)
  - 월 최고 노령연금은 없음
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) :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70%가 월 연금액
  -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은 월 266 마나트(manat)(2019년 1월에는 월 293 마나트 (manat))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#### 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명목확정기여(NDC)) : 월 연금액은 평균 기대수명과 가입자의 명목 연금 납입총액으로 계산
  -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연금수급자격은 근로 년 수, 소득, 및 퇴직 후 평균 기대수명에 근거하여 명목 연금 납입총액으로 환산
  - 월 최소 장애연금은 그룹I장애자에게는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155%, 그룹II장애자에게는 135%, 또는 그룹III장애자에게는 115%; 장애가 어릴 때 발생했다면 어떠한 장애자 그룹에게도 190%
  -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은 월 279 마나트(manat)임.(2019년 1월에는 월 307 마나트(manat))
  - 월 최고 장애연금은 없음
  - 한 개 이상의 급여(질병, 출산, 육아 수당, 유족, 또는 사회연금)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의 급여만 선택할 수 있음
  - 지속적인 주의 수당 :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20%가 매월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20%가 매월 각각의 수급자격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지급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- 장애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월 최소 연금액은 그룹 I 장애자에게는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160%, 그룹II장애자에게는 140%, 또는 그룹III장애자에게는 120%; 18세 이상이며 장애가 어렸을 때 발생했다면 어떠한 장애자에게도 200%
  -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은 월 266 마나트(manat)(2019년 1월에는 월 293 마나트 (manat))
  - 한 개 이상의 급여(질병, 출산, 아동 돌봄 수당, 유족, 또는 사회연금)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오직 하나의 급여만 선택할 수 있음
  - 지속적인 주의 수당 :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20% 매월 지급
  - 피부양자 보조금 : 국가급여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20%가 각각의 수급자격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매월 지급
  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#### ○ 유족급여

- 유족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월 연금액은 한 명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을 위해서는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65%; 두 명을 위해서는 125%; 세 명을 위해서는 145%; 네 명을 위해서는 170%; 다섯 명을 위해서는 185%; 그리고 여섯 명 이상의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을 위해서는 200%. 월 연금액은 모든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

사이에 동등하게 나누어짐

-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은 월 279 마나트(manat)(2019년 1월 기준 월 307 마나트(manat))
- 고아사회연금(사회부조) : 월 연금액은 한 명의 완전한 고아를 위해서는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값의 145%; 두 명을 위해서는 230%; 세 명 이상의 완전한 고아를 위해서는 285%
- 최소 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본 금액은 월 279 마나트(manat)(2019년 1월 기준 월 307 마나트(manat))
- 급여조정 : 급여는 국가 평균 임금의 변화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조정

## 7 관리운영기관

- 노동 및 투르크메니스탄 국민을 위한 사회 보호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 of the Population of Turkmenistan)
  - <http://mlsp.gov.tm>
  - 전반적인 조율 및 감독 제공
- 투르크메니스탄 연금기금(Pension Fund of Turkmenistan)과 지방 및 지역사무실
  - 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<2018년 ISSA 자료>